

Deloitte Insights

May 2026



스테이블코인 시대의 기업 회계

회계 기준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방향

디지털자산센터 | 한국 딜로이트 그룹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Deloitte.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목차

서문: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 기업 회계의 새로운 과제	03
01 디지털자산 시장의 진화	04
02 가상자산 보유 회계의 기본 체계: IFRS와 US GAAP	06
03 발행자와 보유자의 회계처리 차이와 주요 쟁점	10
04 스테이블코인 회계처리의 주요 쟁점과 해외 사례	14
05 스테이블코인의 후속 측정과 리스크 관리	17
06 기업의 회계 대응과 재무전략 방향	19
결론: 선제 대응이 필요한 디지털자산 회계	21

서문: 스타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 기업 회계의 새로운 과제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제정과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법(MiCA) 시행 등 주요국의 제도 준비가 이어지면서 스타이블코인은 제도권 금융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군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에는 가격 변동성이 높은 암호자산 시장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된 안정성과 블록체인 기반의 신속한 이전·결제 가능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결제·송금·정산·예치 수단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보다 회계와 재무관리의 변화다. 스타이블코인을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는지, 발행자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존재하는지, 환매가 실제로 가능한지에 따라 회계 분류와 측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무상태표 구조는 물론 손익 인식, 유동성 지표, 공시 범위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스타이블코인 전용 회계기준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IFRS(국제회계기준,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는 일반적인 가상자산에 대해 채고자산 또는 무형자산 중심의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 회계기준(US GAAP) 역시 특정 암호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 기준을 도입했으나, 스타이블코인의 상환권·준비자산 구조·발행자 의무와 같은 특수성에 대해서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도 동일한 스타이블코인이라 하더라도 발행자와 보유자, 보유 목적, 환매 구조, 준비자산의 유동성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회계정책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스타이블코인은 기존 비트코인 등 일반 가상자산과 구조적으로 구별된다. 상당수 스타이블코인은 발행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준비자산에 기반한 가치 안정 메커니즘, 지급결제 목적의 실사용성을 갖고 있다. 이는 일정 조건 하에서는 금융자산 또는 현금성 자산에 보다 근접한 경제적 실질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준비자산의 투명성이 낮거나 환매 지연, 페그(peg)* 이탈, 규제 리스크가 큰 경우에는 보다 보수적인 회계·리스크 관리 접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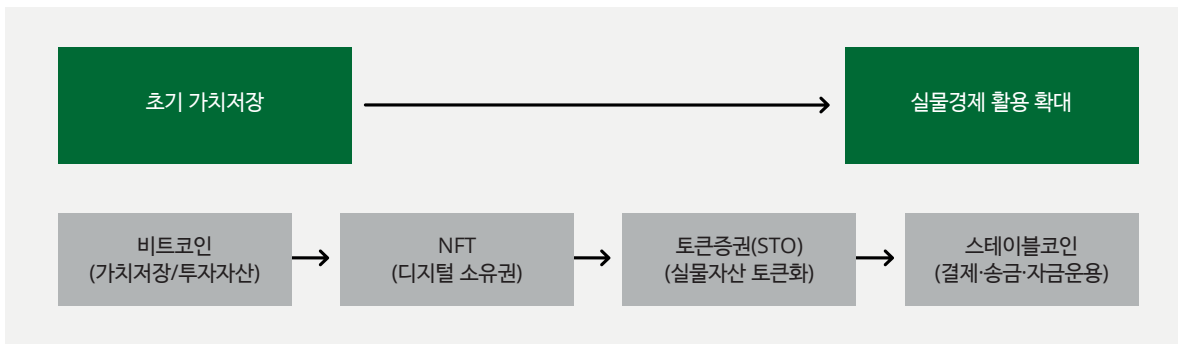
결국 기업의 대응 수준은 스타이블코인을 도입했는지 여부보다, 이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고 어떤 회계정책과 통제 체계 아래 관리할 것인지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업 기획 초기부터 재무·회계·감사 조직이 함께 참여해 보유 목적별 분류 원칙, 증빙 체계, 지급 통제, 공시 및 세무 대응 프로세스를 선제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페그(peg): 스타이블코인 가격을 특정 법정통화(예: 미국 달러) 가치에 연동해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한 기준 가격 구조

01. 디지털자산 시장의 진화

디지털자산 시장은 기술 혁신과 제도 정비, 시장 수요 확대를 바탕으로 빠르게 영역을 넓혀왔다. 초기에는 중앙기관 없이 개인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한 새로운 가치 이전 수단으로 주목받았지만, 현재는 투자자산, 결제수단, 디지털 소유권 관리, 실물자산 토큰화, 공공 통화의 디지털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자산이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 새로운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디지털자산 시장의 진화와 기능 확장



출처: 딜로이트 분석

비트코인과 초기 암호화폐

2009년 등장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대표적 암호화폐로, 중개기관 없이 글로벌 단위의 가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다는 구조적 특성은 인플레이션 헤지 및 디지털 대체자산으로서의 기대를 형성했고, '디지털 금'(Digital Gold)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이후 이더리움(Ethereum)을 비롯한 다양한 알트코인이 등장하면서 스마트계약, 탈중앙화 금융(DeFi), 토큰 발행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되었다.

NFT(Non-Fungible Token)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각 토큰이 서로 동일한 가치로 교환될 수 없는 고유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이나 일반 암호화폐가 동일 단위 간 교환 가능한 대체 가능 자산이라면, NFT는 개별 자산마다 고유성과 희소성을 가진다. NFT는 디지털 예술품, 음악, 영상, 게임 아이템, 멤버십 권리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과 거래 이력을 블록체인 상에서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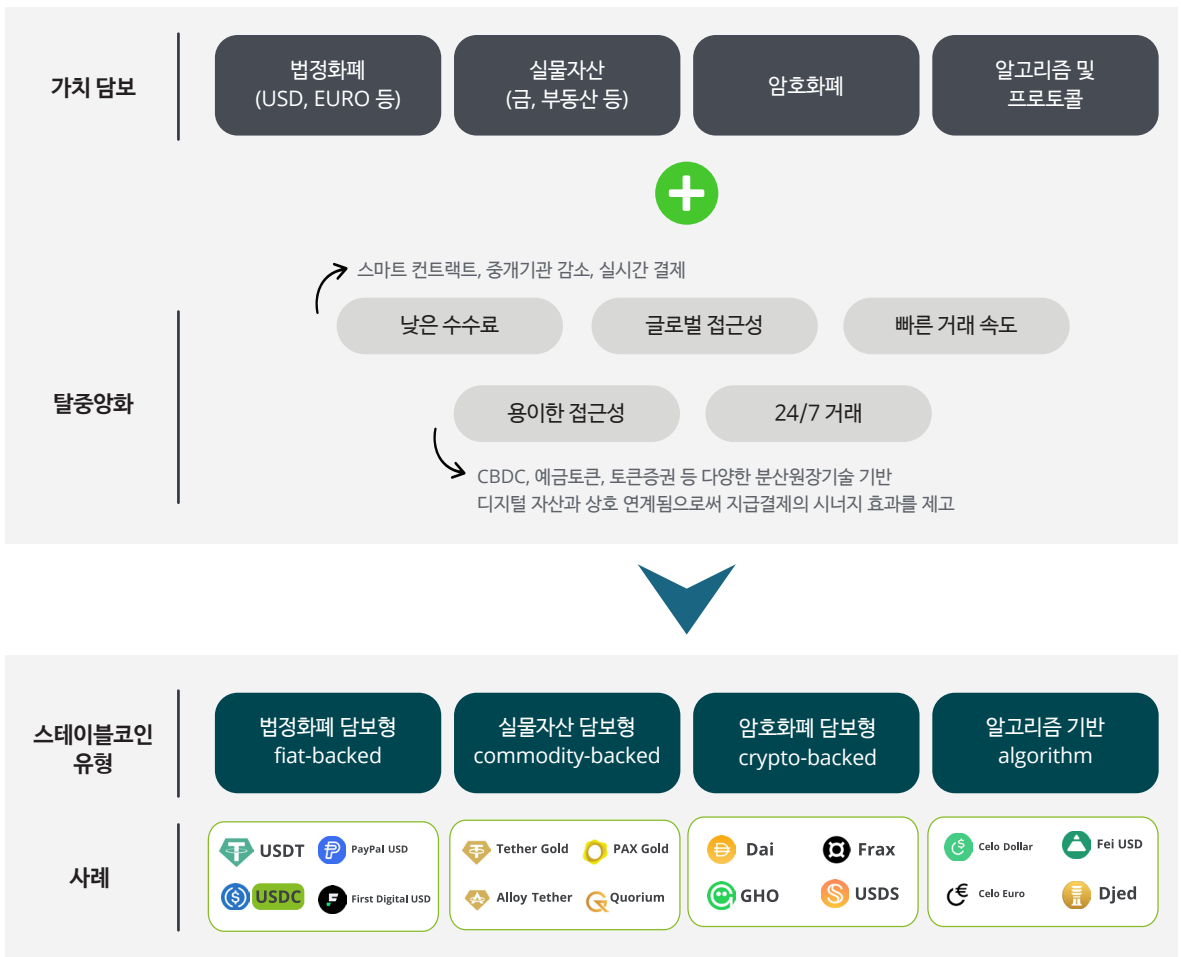
토큰증권(Security Token)

토큰증권은 주식, 채권, 수익증권, 부동산 지분 등 기존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 형태로 발행한 디지털자산이다. 전통적 증권의 법적 권리와 규제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거래 효율성·소수점 단위 투자·유통 구조 혁신 등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비상장주식, 부동산, 인프라 자산, 미술품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토큰화함으로써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참여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과 거래소 역시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며 관련 시장 선점을 모색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최근 가장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는 분야는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으로, 가격 변동성을 낮춰 결제·송금·정산 등 실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다. USDT, USDC, PayPal USD(PYUSD) 등이 대표적이며, 미국 지니어스법 과 EU MiCA 등 제도 준비를 계기로 민간 디지털 결제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준비자산의 투명성, 환매 구조, 규제 준수 여부는 여전히 핵심 리스크 요인이다.

그림 2. 스테이블코인 개념 및 유형



출처: OBDIA, 딜로이트 재구성

02. 가상자산 보유 회계의 기본 체계: IFRS와 US GAAP

가상자산 보유 회계의 출발점은 전용 기준서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기존 회계기준을 어떤 자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IFRS에는 디지털자산 전용 기준서가 없고, US GAAP도 오랫동안 기존 무형자산 규정을 중심으로 회계처리를 해왔다. 그 결과 가상자산은 독립된 자산군으로 일괄 정리되기보다 보유 목적, 계약상 권리의 존재, 기준서 적용 범위에 따라 기존 자산 범주 안에서 해석되어 왔다.

IFRS는 암호화폐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 기준서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산의 사용 목적과 특성을 기준으로 기존 기준서를 해석·적용하는 원칙기반 접근을 취한다. 이러한 방식은 새로운 자산 유형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회계 판단의 재량이 크게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다.

2019년 6월 IFRS 해석위원회(IFRIC,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는 ‘암호화폐 보유’(Holdings of Cryptocurrencies) 의제결정을 통해 논의 대상을 분산원장에 기록되고, 암호기술로 보호되며, 관할당국이나 다른 당사자가 발행하지 않았고,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간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는 암호화폐로 한정했다.

위원회는 우선 해당 암호화폐를 현금(IAS 7)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정통화가 아니며 가격 변동성이 크고, 일반적인 지급수단으로 널리 통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유였다. 또한 발행자와 보유자 간 계약관계가 없고 특정 현금흐름에 대한 청구권도 존재하지 않아 금융자산(IFRS 9)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정 기업의 잔여지분을 나타내지 않는 만큼 지분상품(IAS 32)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정리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초기형 가상자산은 금융상품보다 비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해석이 일반화되었고, 최종적으로 무형자산(IAS 38) 정의를 충족하는 자산으로 해석됐다. 다만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IAS 2)으로 분류하도록 정리되었다. 즉, 기존 IFRS 체계에서 가상자산 회계의 핵심은 자산의 명칭이 아니라 권리 구조와 보유 목적에 따라 분류를 결정하는 데 있다.

그림 3. IFRIC 2019 의제결정의 가상자산 분류

IFRS IC는 논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세 가지 특성을 가진 자산을 암호화폐로 전제하여 검토



출처: IFRS, 딜로이트 재구성

국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실무도 유사한 출발점을 취해 왔다. 2019년 질의회신[2019-I-KQA017]은 암호화되어 분산원장에 기록되고, 관할기관이나 다른 당사자가 발행하지 않으며,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간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는 가상통화를 전제로,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 목적이면 재고자산, 그렇지 않으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림 4. K-IFRS 질의회신 [2019-I-KQA017]

회신

가상통화를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

판단근거

대상

1. 보안을 위해 **암호화**되어 분산원장에 기록되고,
2. 관할 기관이나 다른 당사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으며**,
3.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간의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은** 가상통화로 한정

금융자산 해당 여부

가상통화는 일반적인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치변동위험이 크며**,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음

➤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음**

자산으로서의 성격

가상통화는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이며,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에 해당

출처: 금융감독원, 딜로이트 재구성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3년 12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확정하면서, 이를 새로운 회계기준이 아니라 기존 IFRS 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감독상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감독지침은 발행자·보유자·거래소·공시 이슈를 구체화했으며, 원칙적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도록 하되, 거래소의 고객위탁 가상자산 관련 사항은 2024년 7월 19일 이후 재무보고일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그림 5.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감독지침의 성격	<p>국제회계기준(IFRS)등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존 해석은 아님</p> <p><small>*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IFRS 및 동 감독지침을 준수하여 회계처리 및 공시</small></p>						
시행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 1. 1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 가능 · 다만,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의 경우 '24. 7. 19 이후를 재무보고일로 하여 (예시, '24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3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 공시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될 수 있는 증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background-color: #e0e0e0;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margin: 5px 0;">분산원장 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 사용 <li style="background-color: #e0e0e0;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margin: 5px 0;">암호화(cryptography)를 통해 보안 <li style="background-color: #e0e0e0;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margin: 5px 0;">대체가 가능(Fungible)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4a5c; color: white; border-radius: 10px;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10px;">가상자산의 정의 및 적용 대상</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border-bottom: 1px solid #ccc; padding: 5px;"> 가상자산법(안)상 정의 </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padding: 0 10px;"> ➤ </td> <td style="width: 40%; text-align: center; border-bottom: 1px solid #ccc; padding: 5px;"> 감독지침 적용대상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10px;">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징표 </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10px;">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중 분산원장 기술 또는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고 암호화되며, 대체 가능한 가치나 권리 </td> </tr> </table>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토큰증권도 적용대상 	가상자산법(안)상 정의	➤	감독지침 적용대상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징표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중 분산원장 기술 또는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고 암호화되며, 대체 가능한 가치나 권리
가상자산법(안)상 정의	➤	감독지침 적용대상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징표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중 분산원장 기술 또는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고 암호화되며, 대체 가능한 가치나 권리					

출처: 금융위원회, 디지털트 재구성

이처럼 IFRS와 국내 기준에서는 가상자산 보유 회계의 핵심이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의 구분에 놓여 있다. 무형자산은 IAS 38에 따라 일반적으로 원가모형이 적용되고,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재평가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재고자산은 IAS 2에 따라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브로커-트레이더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각원가 차감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가상자산이라도 보유 목적에 따라 측정 방식과 손익 인식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US GAAP의 접근은 IFRS와 다소 다르다. 전통적으로는 가상자산을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으로 보아 손상차손만 인식하고 가치 회복은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3년 ASU 2023-08을 발표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암호자산에 대해 매 보고기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며 그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무형자산 정의를 충족하고, 보유자에게 기초 재화·용역·기타 자산에 대한 집행 가능한 권리 또는 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분산원장에 존재하고, 암호기술로 보호되며, 대체가능하고, 보고기업이나 특수관계자가 발행하지 않은 자산이다. 이 개정은 2024년 12월 15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와 그 중간기간부터 적용된다.

결국 기존 가상자산 보유 회계의 기본 체계는 두 갈래로 정리된다. IFRS와 국내 기준은 보유 목적과 계약상 권리 구조를 중심으로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을 구분하는 체계이고, US GAAP은 최근 일정 범위의 암호자산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 체계를 도입한 구조다. 다만 두 체계 모두 논의의 출발점이 된 자산은 대체로 발행자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없는 초기형 암호화폐였다. 따라서 상환권, 준비자산, 결제 기능을 갖춘 스테이블코인이나 보다 명확한 권리 구조를 가진 디지털자산까지 이 틀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6. 가상자산 회계 처리: IFRS와 US GAAP
자산 명칭보다 보유 목적과 권리 구조가 중요

구분	IFRS / K-IFRS	US GAAP
	원칙 기반 회계처리	명시적 지침 중심 접근
기본 접근	전용 기준서 없이 기존 기준 해석 적용	전통적으로 무형자산 접근, 이후 일부 공정가치 측정 도입
대표 기준	IFRIC 2019, IAS 2, IAS 38, K-IFRS 질의회신, 2023 감독지침	ASU 2023-08, ASC 350-60
기본 분류 논리	판매 목적이면 재고자산, 그 외는 무형자산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정가치 측정, 범위 밖은 기존 무형자산 모델
핵심 판단 기준	보유 목적, 계약상 권리 유무	범위 충족 여부, 법적 청구권 유무

출처: IFRS, US GAAP, 금융위원회, 딜로이트 재구성



03. 발행자와 보유자의 회계처리 차이와 주요 쟁점

가상자산 회계의 핵심은 어떤 토큰인가보다 기업이 시장에 어떤 역할로 참여하는가에 있다. 동일한 디지털자산이라도 보유자와 발행자는 회계상 검토해야 할 질문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보유자는 가상자산을 취득해 보유·사용·매각하는 주체이고, 발행자는 토큰을 설계·판매·배분하며 백서나 약정에 따라 재화·용역·플랫폼 접근권 등을 제공하는 주체다. 따라서 같은 디지털자산이라도 보유자에게는 자산의 분류와 측정이 핵심인 반면, 발행자에게는 의무의 존재, 수익인식 시점, 개발원가 처리, 유보토큰* 관리가 핵심 쟁점이 된다.

그림 7. 발행자와 보유자의 회계처리 비교

구분	보유자	발행자
핵심 질문	어떤 자산으로 분류하고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어떤 의무가 발생하며 언제 수익 또는 부채를 인식할 것인가
주요 기준	IAS 2, IAS 38, IFRS IC 2019 의제결정, K-IFRS 질의회신	IFRS 15, IAS 38, IAS 37, IAS 32/ IFRS 9, 국내 감독지침
핵심 쟁점	재고자산 vs 무형자산 vs 금융상품, 최초·후속 측정	수행의무 식별, 계약부채/금융부채, 개발비 자산화, 유보토큰
손익 영향	평가손익, 손상차손, 처분손익	수익인식 시점, 비용 처리, 총당부채 인식 여부
공시 포인트	보유 규모, 평가 방법, 가격·유동성 리스크	토큰 구조, 의무 범위, 유보토큰 수량, 락업·배분 계획

출처: 딜로이트 분석

* 유보토큰: 디지털자산 발행 시 즉시 시장에 유통하지 않고 발행자가 별도로 보유·관리하기 위해 남겨둔 토큰

보유자 회계의 출발점은 보유 목적과 권리 구조다. IFRS 기준에서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재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장기 투자 목적 등 다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접근이 일반적이다. 이는 가상자산이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분리 가능하며, 현금이나 금융자산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직접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US GAAP은 ASU 2023-08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상자산은 공정가치 측정 대상이 될 수 있으나, NFT나 토큰화 부동산처럼 권리 구조가 다른 자산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림 8. 가상자산 보유자의 회계처리: IFRS vs. US GAAP

구분	IFRS	US GAAP
분류	<p>보유 목적에 따라,</p> <p>재판매 목적: 일반적인 영업 과정에서 재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재고자산으로 분류</p> <p>장기 투자 목적 등: 다른 기준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물리적 실체가 없고 분리 가능하며 현금이나 금융자산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없는 특성을 고려하여 무형자산으로 분류</p>	<p>ASU 2023-08 적용 여부 결정</p> <p>적용 대상: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특정 요건 (무형자산 정의 충족, 대체 가능성, 발행자가 보고 기업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등)을 충족하는 가상자산</p> <p>적용 제외: 토큰화된 부동산이나 NFT 등은 ASU 2023-08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p>
최초 인식	<p>취득 금액(구입가격 + 직접 귀속 비용)으로 측정. 비현금 대가로 받은 경우 공정가치로 측정 (공정가치 추정 불가능 시 상품/서비스 공정가치 사용)</p> <p>*차변: 가상자산(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 대변: 현금 등</p>	<p>IFRS와 동일</p>
후속 측정	<p>재고자산: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p> <p>무형자산: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가모형: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측정 재평가모형: 활성 시장이 존재하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다만, 이전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 	<p>ASU 2023-08 적용 대상: 매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변동(미실현 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p> <p>ASU 2023-08 적용 제외: 기존 원가-손상차손 모델을 적용하며, 가치 하락 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만 가치 회복 시 환입은 불가능</p>
처분	<p>가상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때, 수취한 대가와 장부 금액(최종 측정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p>	<p>IFRS와 동일</p>

출처: IFRS, US-GAAP, 딜로이트 재구성

보유자의 최초 인식은 일반적으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현금으로 취득한 경우 매입가격과 직접 귀속 원가를 포함한 금액으로 측정하며, 비현금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수취한 토큰 또는 제공한 재화·용역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후 후속 측정은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IFRS에서는 재고자산이면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무형자산이면 원가모형 또는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재평가모형으로 측정한다. US GAAP에서는 ASU 2023-08 적용 대상 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 손상 중심 모델이 유지된다.

가상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취 대가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보유자 회계의 핵심은 가격 변동 자체보다 초기 분류와 후속 측정 체계가 손익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있다. 동일한 가상자산이라도 어떤 기준을 적용받는지에 따라 손익 변동성과 재무상태표 표시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림 9. 가상자산 보유자의 회계처리-최초 측정
취득 방식과 경로를 고려하여 토큰의 최초 취득원가를 결정

유상취득	용역 제공대가 또는 기타 교환에 따른 취득
<p>구입가격에 취득을 위해 직접 관련된 원가를 가산하여 취득금액으로 인식</p>	<p>토큰을 플랫폼 개발 또는 운영에 기여(용역 제공)한 대가 또는 기타 비화폐성자산과의 교환에 의해 취득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토큰 공정가치의 합리적 측정 가능 시) 토큰의 공정가치로 측정 (토큰 공정가치의 합리적 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용역의 개별판매가격 또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
플랫폼 운영, 채굴	무상수령
<p>제 3자와의 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플랫폼 운영 또는 채굴을 통해 취득한 경우, 관련 비용(서버 임차료, 전기요금, 전산가동비 등)이 토큰 취득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토큰 취득금액으로 인식</p>	<p>무상배포하는 경우 수령 당시 플랫폼 내에서 재화나 용역 이용대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토큰의 합리적인 공정가치가 형성된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최초 수령시 '0'으로 인식</p>

출처: 딜로이트 재구성

반면 발행자 회계는 구조적으로 더 복잡하다. 토큰을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구매자에게 약속한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 판매 대가는 즉시 매출이 아니라 계약부채, 금융부채 또는 기타 의무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발행자가 플랫폼, 프로토콜, 토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은 자동으로 자산이 되지 않는다.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활동이 연구단계를 넘어 개발단계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기술적 실현가능성, 완성 의도, 미래경제적효익, 필요한 자원 확보, 지출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 가능성 등이 충족될 때에만 개발비 자산화를 검토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발생 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산화된 개발비는 이후 손상검토 대상이 되고, 관련 공시도 함께 요구된다.

토큰 판매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수익인식 여부가 핵심이다. 유틸리티 토큰 등 구매자가 발행자의 고객에 해당한다면 IFRS 15 수익기준서를 적용해 수행의무 이행 시점 또는 기간에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수행의무는 일반적으로 백서(White Paper), 판매약정, 서비스 조건 등을 통해 식별된다. 토큰 판매 대가를 먼저 수취했다라도 향후 플랫폼 접근권 제공,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제공 의무가 남아 있다면 즉시 매출이 아니라 계약부채로 처리될 수 있다. 또한 판매 시점에 명확히 제시한 수행의무를 사후적으로 임의 변경해 수익을 앞당기는 접근은 허용되기 어렵다.

발행자는 토큰을 판매 외의 방식으로도 배분한다. 개발팀원이나 임직원에게 보상으로 지급하는 토큰은 급여 또는 보상거래 성격 검토가 필요하며, 외부 개발사나 자문사에 지급하는 토큰은 용역 대가로 보아 관련 원가를 인식할 수 있다. 무상배포 역시 단순히 배포 시점에 비용이나 수익으로 처리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의무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즉 토큰을 무상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회계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유보토큰 역시 실무상 민감한 영역이다. 국내 감독지침은 발행 후 아직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발행자가 내부적으로 보유하는 유보토큰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이 스스로 토큰을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외부로부터 통제 가능한 경제적 자원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유보토큰이 시장에 배분될 경우 기존 유통량, 가격, 투자자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총 발행량, 유보 수량, 락업 조건, 상장 현황, 향후 활용·배분 계획 등은 중요한 공시 대상이 된다. 이는 과거 일부 프로젝트가 유보토큰을 기업 가치처럼 인식했던 관행과 구별되는 현재 실무 기준이다.

그림 10. 가상자산 발행자 회계처리 유형

영역	주요내용	핵심 회계 이슈
개발	플랫폼·토큰 구축	개발비 자산화, 손상검토
판매계약	토큰 판매	수행의무 식별, 계약부채, 수익인식
기타 배분	직원보상·용역대가·무상배포	비용 인식, 거래 실질 판단
유보토큰	자체 보유 물량	자산 인식 여부, 공시

출처: 딜로이트 분석

보유자 회계는 자산의 분류와 측정이 핵심이고, 발행자 회계는 의무의 인식과 수익 인식 시점이 핵심이다. 보유자는 재고자산·무형자산·금융상품 여부가 중요하지만, 발행자는 계약부채, 개발비, 유보토큰, 공시가 핵심이다. 동일한 디지털자산이라도 기업의 역할이 달라지면 회계 쟁점도 완전히 달라진다. 이러한 구조는 스타이블코인 회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발행자에게는 상환의무와 준비자산 관리가, 보유자에게는 현금성·금융자산성·유동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된다.

04. 스타이블코인 회계처리의 주요 쟁점과 해외 사례

스태이블코인 회계의 핵심은 단순히 가상자산인지 여부에 있지 않다. 어떤 구조로 발행되었는지, 보유자에게 어떤 권리가 부여되는지,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비트코인 등 초기형 암호화폐는 일반적으로 발행자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없고 시장 수급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 중심의 논의가 가능했다. 반면 스타이블코인은 가치 안정 메커니즘, 상환 구조, 준비자산, 지급결제 기능을 전제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가상자산 회계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자산군으로 평가된다.

준비자산 역시 중요하다. 스타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은 일반적으로 현금, 요구불예금, 단기 국채 등 높은 유동성을 가진 자산에 의해 뒷받침된다. 다만 준비자산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유자에게 해당 자산에 대한 직접 청구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준비자산의 존재 자체보다, 보유자의 상환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구조, 자산 보관 체계, 유동성 관리 정책이 갖춰져 있는지가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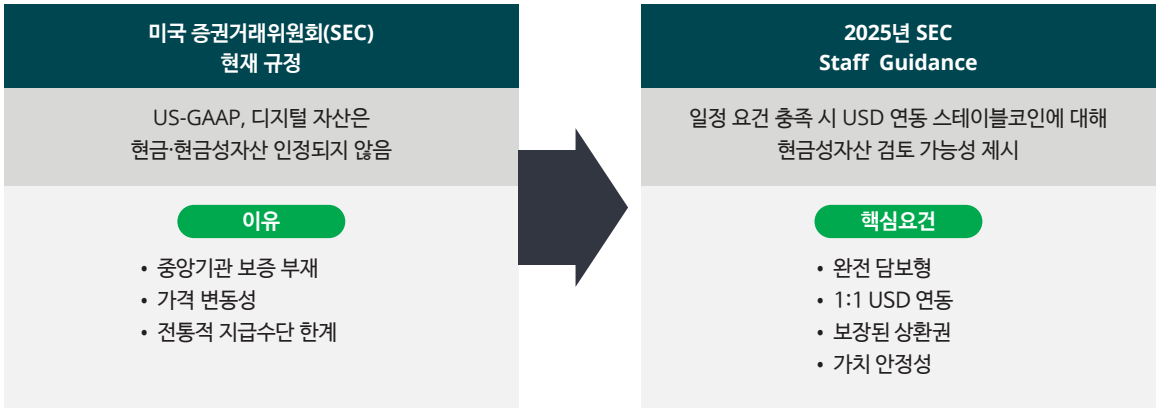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사용 목적이다. 많은 스타이블코인은 투자 목적보다 결제·송금·정산·운영자금 관리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설계된다. 이에 따라 일부 스타이블코인은 단순 투자성 가상자산보다 디지털 지급수단에 가까운 성격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변화는 회계 분류 논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가장 민감한 논점은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cash or cash equivalents) 여부다. 현재 기준상 모든 스타이블코인이 일반적으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상환권이 명확하고, 준비자산이 충분하며, 약정 금액으로 신속한 환매가 가능하고, 가치 변동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다.

IFRS 기준에서는 스타이블코인의 구조에 따라 여러 접근이 가능하다. 발행자에 대한 계약상 상환청구권이 존재한다면 금융자산(IFRS 9)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 반면 그러한 권리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행사 가능성이 낮다면 무형자산(IAS 38) 또는 보유 목적에 따라 재고자산(IAS 2) 접근이 검토될 수 있다. 결제 목적의 단기 보유 자산이라 하더라도 IAS 7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페그 붕괴, 환매 지연, 준비자산 신뢰도 저하 등은 손상 또는 공정가치 하락 검토 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최근 일부 스타이블코인에 대한 회계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디지털자산 전반을 현금성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했으나, 2025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직원지침(SEC Staff Guidance)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달러 연동 스타이블코인에 대해 제한적으로 현금성자산 검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전통 금융기관이 스타이블코인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온 회계 불확실성을 일부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는 모든 스타이블코인에 일률 적용되는 일반론이 아니라, 개별 상품 구조와 기업의 회계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이다.

그림 11. 미국 스테이블코인 현금성자산 논의 동향



▶▶▶▶ 전통 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사업 참여를 제약해 온 회계 불확실성 완화 계기 ◀◀◀◀

출처: SEC, 딜로이트 분석

해외 공시 사례를 보면 스테이블코인 회계의 판단 기준은 자산의 명칭이 아니라 권리 구조와 경제적 실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 스테이블코인 회계 공시 사례

구분	회계처리 방식	시사점
서클	고객으로부터 달러를 수취하면 USDC를 발행하고, 해당 금액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 예치금으로 부채 인식 대응 자산은 보유자 이익을 위해 분리 보관된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인식	발행자 입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수익이 아닌 상환의무가 수반된 부채로 보는 경향
코인베이스	보유 스테이블코인을 대출용, 담보용, 일반 보유분 등 목적별로 구분해 자산 인식. USDC는 현금·현금성자산과 별도로 기타 유동성 자산으로 분류	보유자 입장에서는 보유 목적과 사용 방식에 따라 자산 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

출처: 각사 공시자료((10-K, F-1), 딜로이트 재구성

05. 스타이블코인의 후속 측정과 리스크 관리

스태이블코인 회계에서 초기 분류만큼 중요한 영역은 후속 측정이다. 실제 재무제표 영향은 최초 인식 시점보다 보유 이후 평가 과정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스타이블코인은 표면적으로 가치가 안정된 자산처럼 보이지만, 회계상 평가는 자산 분류, 상환 구조의 지속 가능성, 준비자산의 질과 유동성, 시장가격과 환매가격 간 괴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후속 측정은 단순 시가평가가 아니라, 약정된 가치와 실제 회수 가능성이 계속 유지되는지 점검하는 과정에 가깝다.

스태이블코인이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손상검토가 핵심 쟁점이 된다. IFRS에서는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에 대해 최소 연 1회 이상 또는 손상징후 발생 시 손상검토를 수행해야 하며, 내용연수가 한정된 경우에는 손상징후가 존재할 때 회수가능가치를 검토한다. 국내 감독지침 역시 가상자산 가치 하락이나 회수 가능성 저하가 발생한 경우 손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US GAAP은 적용 대상 자산에 따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ASU 2023-08 적용 대상 암호자산은 보고기간마다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반면 적용 대상이 아닌 자산은 기존 기준에 따라 손상 중심 모델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실무에서도 모든 스타이블코인에 동일한 후속 측정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가치 또는 회수가능가치 측정 역시 중요한 실무 판단 영역이다. 스타이블코인의 가치는 단순히 '1달러에 연동된다'는 명목상 구조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보고일 현재의 거래가격, 거래량, 환매 가능성, 발행자의 지급능력, 준비자산 구성, 시장 신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일부 거래소에서만 제한적으로 거래되거나 유동성이 낮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은 실제 회수 가능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부금액(carrying amount)* 이 공정가치 또는 회수가능가치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손실을 즉시 인식해야 한다. 이는 당기손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보유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실적 변동성과 재무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 페그 이탈과 환매 지연이다. 스타이블코인의 시장가격이 기준 통화와 일시적으로 괴리되는 현상은 단순 가격 변동처럼 보일 수 있으나, 괴리 폭이 커지거나 장기화되면 이는 상환 구조 또는 준비자산에 대한 시장 신뢰 저하를 의미할 수 있다. 또한 환매 절차가 지연되거나 제한되는 상황은 단순 운영 이슈가 아니라 자산의 현금 회수 가능성을 직접 약화시키는 사건이다.

준비자산의 건전성과 발행자의 신용위험도 중요하다. 준비자산 내 고위험 자산 비중 확대, 정보 공시의 투명성 저하, 발행사의 지급여력 악화, 규제 조사 또는 법적 분쟁 발생 등은 모두 손상징후 또는 추가 공시 검토 사유가 될 수 있다. 특히 스타이블코인은 발행자에 대한 신뢰가 가치 유지의 핵심인 만큼, 전통 자산보다 비재무적 리스크가 회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 장부금액(carrying amount)은 기업이 자산이나 부채를 현재 재무제표에 기록해 둔 금액

그림 13. 스테이블코인 손상징후 및 후속 측정 체크포인트

구분	주요 내용
손상검토 주기 및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RS: 연 1회 이상 또는 손상징후(폐그 붕괴, 환매 지연 등) 발생 시마다 손상검토수행 • US GAAP: 연 1회 반드시 수행하며, 손상징후발생 시 수시로 추가 검토. 뚜렷한 공정가치 측정 정책이 요구됨
공정가치 (또는 회수가능가치)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가격판단: 일부 거래소에서 유동성이 낮거나 페그(\$1) 이탈 사례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소 별 시세, 거래량 등을 감안해 현실적 공정가치도출 필요 • 유동성 및 환매가능성: 준비금 투명성 부족, 환매지연위험(issuer risk)이 있어 실제로 현금 등가성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 IFRS와 GAAP 모두 이 같은 신뢰성 부족 시 손상인식가능성 있음
손상 인식 결과 및 손실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상발생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또는 회수가능가치) 밑으로 떨어지면 손실을 즉시 인식
전형적 손상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그 이탈 장기화 • 대규모 환매 지연, 발행사의 지급여력관련 부정적 뉴스 • 준비금 구성(현금이 아닌 고위험 자산 편입, 투명성 저하 등) • 규제-공시 리스크 증가, 스테이블코인 시장 환경 악화

출처: 딜로이트 분석

공시 이슈도 후속 측정만큼 중요하다.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어떤 회계정책을 적용했는지, 주요 가정은 무엇인지, 어떤 위험이 남아 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상환권 구조, 준비자산 성격, 분리보관 여부, 발행자 집중위험, 환매 제한 가능성 등이 핵심 공시 대상이 된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의 후속 측정은 가격 안정성만을 전제로 단순화할 수 없다. 손상검토가 필요한지, 공정가치 재측정이 필요한지, 페그 이탈이 일시적 현상인지 구조적 신호인지, 환매 지연이 운영 문제인지 회수 가능성 저하인지까지 함께 판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회계는 단순 측정의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신용·법률·운영 리스크를 함께 읽는 재무관리 도구가 된다. 스테이블코인이 기업 재무전략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도입 시점의 분류 판단만큼이나, 도입 이후의 후속 측정과 공시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06. 기업의 회계 대응과 재무전략 방향

스태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면서 기업의 대응은 더 이상 검토 단계에 머물 수 없다. 주요국의 제도 정비가 진행되면서 스태이블코인은 비제도권 디지털자산이 아니라, 규제·회계·재무관리 체계를 함께 요구하는 새로운 자산군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제 기업의 핵심 과제는 단순히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에 따른 회계정책과 재무 영향을 사업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스태이블코인은 동일한 명칭의 자산이라도 상환권 구조, 준비자산의 질, 환매 가능성, 보유 목적에 따라 회계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일부는 현금성자산, 일부는 금융자산, 일부는 무형자산 또는 기타 유동자산 등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분류 차이는 단순한 회계 표시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의 유동성 지표, 손익 변동성, 부채비율, 내부통제 방식까지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스태이블코인 도입은 기술 검토보다 재무제표 영향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

금융회사에는 스태이블코인을 단순 경쟁 위협이 아니라 결제·예치·정산 인프라 변화의 변수로 인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신규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진하기에 앞서, 보유 스태이블코인의 자산 분류 기준, 상환권 검토 절차, 발행자 및 준비자산 리스크 평가 체계를 우선 정비할 필요가 있다. 발행 또는 제휴 구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고객 자산 보호, 부채 인식 여부, 준비자산 관리, 공시 의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스태이블코인 사업은 상품 출시 이후 회계 이슈를 보완하는 방식보다, 사업모델 설계 단계에서 회계·규제 구조를 함께 점검하는 접근이 중요하다.

일반기업

일반기업의 출발점은 기술 검토가 아니라 활용 목적의 명확화다. 스태이블코인을 수출입 대금 결제, 해외 자회사 운영자금 이전, 글로벌 공급망 정산, 디지털 콘텐츠 해외 매출 수취, 전자상거래 결제 등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먼저 정의해야 한다. 이후 해당 목적에 맞춰 회계 분류, 세무 영향, 감사 대응, 내부통제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스태이블코인을 단순 예금 대체재로 접근하기보다, 발행자 신용위험, 환매 절차, 준비자산 구조를 반영한 별도의 자금관리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기업

플랫폼 기업에게 스태이블코인은 단순 보유자산이 아니라 플랫폼 내 결제수단이자 이용자 생태계 확장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회계 이슈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고객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결제수단인지, 서비스 접근권인지, 상환 가능한 가치저장 수단인지에 따라 발행자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 충전 잔액이 고객예치금인지, 선수수익인지, 금융부채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따라서 토큰 설계 단계부터 법무·재무·회계·상품 조직이 함께 참여해 약관 구조와 회계 결과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토큰 판매 이후 수정하는 방식보다, 설계 단계에서 회계 구조를 정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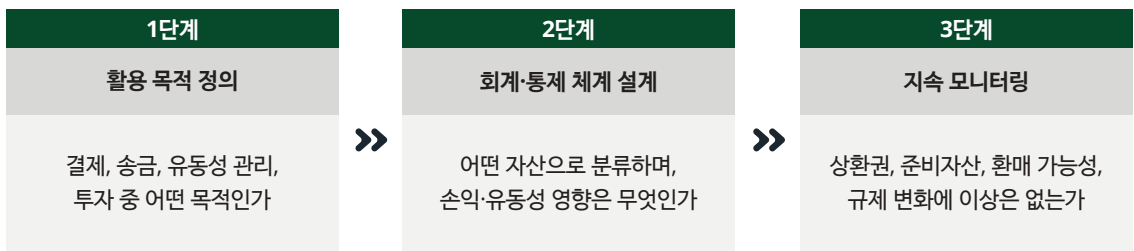


국내 기업 시사점

국내 기업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디지털자산 투자 수단이 아니라, 글로벌 자금 이동 효율화와 결제 인프라 변화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출입 기업, 해외 자회사 보유 기업, 플랫폼 기업은 송금 비용 절감, 정산 기간 단축, 외화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 활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국내 기업은 해외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외환규제, 전자금융 관련 규제, 자금세탁방지 체계, 상장사 공시 부담 등 국내 제도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도입 여부보다 먼저 회계정책, 내부통제, 규제 대응 체계를 동시에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할 때 기업의 대응은 단편적 검토보다, 활용 목적 정의부터 회계체계 설계, 도입 이후 모니터링까지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활용 목적 정의, 회계·통제 체계 구축, 지속 모니터링의 3단계 프레임워크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4.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대응 3단계



출처: 딜로이트 분석

결론. 선제 대응이 필요한 디지털자산 회계

디지털자산 회계는 더 이상 부차적인 검토 과제가 아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 등 초기 가상자산의 분류 문제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스테이블코인처럼 상환권, 준비자산, 결제 기능, 공시 의무를 갖춘 자산군을 기업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주요국의 제도 정비 역시 이러한 변화가 구조적 흐름임을 보여준다.

기업의 대응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시장 유행을 따라가는 속도가 아니라, 디지털자산을 회계와 재무전략의 관점에서 먼저 해석하는 역량이다. 동일한 스테이블코인이라도 보유 목적, 환매 구조, 준비자산의 질, 발행자 신용위험에 따라 자산 분류와 손익 구조, 유동성 지표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도입 이전 단계에서 활용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맞는 회계정책과 내부통제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도입 이후에도 상환권 구조, 준비자산 건전성, 규제 변화, 공시 의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결국 경쟁우위를 만드는 기업은 먼저 도입한 기업이 아니라 먼저 준비한 기업이다. 디지털자산 시대의 경쟁력은 기술 도입 자체보다, 선제적인 회계정책과 재무관리 체계에서 출발한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

블록체인 기술, 디지털자산 분야 종합 자문 서비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디지털자산센터는 기업의 디지털 경제 전환 과정에서 직면하는 전략적, 기술적, 재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 게임, 부동산 및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자산 활용에 대한 전략적 인사이트와 회계감사, 리스크, 세무자문 및 컨설팅을 아우르는 종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기업이 디지털자산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의 여정에서 성장 파트너로서 함께할 것입니다.

Audit & Assurance

김경호 파트너(센터장)

회계감사 부문

☎ 02 6676 1230
@ kyoungghkim@deloitte.com

공선희 파트너

회계감사 부문

☎ 02 6676 1264
@ sgong@deloitte.com

박영범 파트너

회계감사 부문

☎ 02 6676 3066
@ youngbpark@deloitte.com

김선호 파트너

회계감사 부문

☎ 02 6676 1117
@ sunhkim@deloitte.com

이진 수석위원

회계감사 부문

☎ 02 6676 1954
@ lee36@deloitte.com

윤현숙 이사

회계감사 부문

☎ 02 6676 1122
@ hyyun@deloitte.com

황지현 이사

회계감사 부문

☎ 02 6676 1140
@ ihwang@deloitte.com

김지영 이사

회계감사 부문

☎ 02 6676 2796
@ iyoungkim3@deloitte.com

한세리 이사

회계감사 부문

☎ 02 6676 3208
@ serhan@deloitte.com

성백준 이사

회계감사 부문

☎ 02 6676 3367
@ basung@deloitte.com

김영재 부장

회계감사 부문

☎ 02 6676 3268
@ youngjaekim@deloitte.com

정옥성 부장

회계감사 부문

☎ 02 6676 1252
@ okjeong@deloitte.com

최영지 과장

회계감사 부문

☎ 02 6676 2021
@ yeongjchoi@deloitte.com

Strategy, Risk & Transactions

김혜미 파트너

경영자문 부문

☎ 02 6099 4288
@ hkim21@deloitte.com

염승원 파트너

경영자문 부문

☎ 02 6676 2125
@ syeum@deloitte.com

Technology & Transformation

안상혁 파트너

컨설팅 부문

☎ 02 6676 3625
@ sanghyan@deloitte.com

임태수 차장

컨설팅 부문

☎ 02 6676 3867
@ tealim@deloitte.com

신지윤 차장

컨설팅 부문

☎ 02 6676 2057
@ jiyoshin@deloitte.com

Tax & Legal

김영필 파트너

세무자문 부문

☎ 02 6676 2432
@ youngpkim@deloitte.com



앱



카카오톡 채널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Download on the
App StoreGET IT ON
Google Play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Contact us

딜로이트 인사이트 | krinsightsend@deloitte.com
디지털자산센터 | krdac@deloitte.com

연구원

김혜련 Senior Manager
hyerykim@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